

第47回

서울特別市 鍾路區議會 本會議 會議錄

第2號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5年5月12日(金) 10시 06분

議事日程

1.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附議된 案件

1.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金憲中議員 外 4人 發議)1面
2. 서울특별시종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鍾路區廳長 提出)1面

(10時06分 開議)

○議長 李斗鶴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 規定에 의거 재적의원 21명 중 출석의원 1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서울特別市 鍾路區議會 臨時會 제2차 本會議 開議를 선포합니다.

본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 보고를 받고 안건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金憲中議員 外 4人 發議)
2. 서울특별시종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鍾路區廳長 提出)

(10時07分)

○議長 李斗鶴 議事日程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議事日程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市民行政委員會 羅在岩 委員長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고 대신 丁昌熙 幹事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行政委員會 幹事 丁昌熙 市民行政委員會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市民行政委員會 幹事 丁昌熙입니다. 존경하는 李斗鶴 議長님, 芮相浩 副議長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보고에 앞서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議員님들에게 진심으로 感謝를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委員會에 參席하시어 진지하게 案件을 처리하여 주신 市民行政委員會 委員님과 종로구청 관계관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47회 臨時會期 中 本 委員會가 심사한 案件은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本 條例(案)은 金憲中議員 外 4인이 발의한 案件으로 당초 '94. 7. 30 의원 발의로 개정하였는 바 그 당시 개정 취지는 정화조 청소대행업이 독점체제로 運營하도록 規定함으로써 수용가인 市民에게 갖은 횡포와 불이익이 있다는 여론을 수렴하여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本 개정(안)이 정화조 청소 행정에 일대 변혁이 초래되어 광역 청소체제인 서울시 여건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 의결과정에서도 소수 반대의견이 있어 일부 강제 규정 등을 재량 규정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진지하고 심도있게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집행부서인 구청에서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중요한 개정 내용은 대행업체 수는 2개 업체로 하여야 한다 하는 한정 규정을 2개 이상 업체로 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였으며 대행구역은 종로구 전체를 단일 구역으로 한다는 강제규정을 지역단위로 분할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대행업자 선정시 담합방지를 위하여 기존 참여업체 제한 규정을 둔 바 여기에 일부 오해가 있어 본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수정동의(안)으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종량제용 봉투와 관련된 내용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본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30ℓ 용량 규격봉투 신규 제작 및 특수 규격봉투 50ℓ 제작을 하여 용도와 용량을 다양화하여 민원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以上으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參 照)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報告書

1995. 5. 1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5년 5월 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1995년 5월 9일

다. 상정일자: 제4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1995. 5. 11):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김현중의원)

가. 제안이유

- 상기 조례는 '94. 7. 30 의원 발의로 개정하였는 바 당시 개정 취지는 그동안 수십년간 정화조 청소대행업이 독점체제

로 운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용가인 시민에게 갖은 형포와 불이익이 있다는 여론을 수렴하고 경쟁체제 도입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욕적인 취지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우리구에서만 의원 발의로 일대 혁신적인 개정을 한 바 있으나, 본 개정안이 정화조 청소 행정의 일대 변혁을 초래되어 광역청소 체제인 서울시 여건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집행부 의견(재의요구)이 있었고 또 본 개정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소수 반대의견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기본 개정취지는 유지하되 일부 강제규정 등을 재량규정 또는 완화하여 과도기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임.

나. 주요골자

- 대행업체수를 2개업체로 “하여야한다”는 한정규정을 “2개 이상”의 업체로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 대행구역은 종로구 전체를 단일구역으로 한다는 강제규정을 “구획된 지역 단위로 분할할 수 있다”로 개정 하며,
- 대행업자 선정시 담합방지를 위하여 기존참여 업체 제한규정을 두었는 바 여기에 일부 오해가 있어 본규정을 삭제코자 하며,
- 종로구에 거소를 둔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규정도 역시 삭제코자 함.
- 부칙 조항에 시행규칙 제정 근거를 두었으나 본조에 중복되어 있어 이를 삭제 함.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전문위원 장 소수)

- 본 조례(안)은 1994. 8. 2일자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 쟁점사항에 대한 개정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으로 쟁점은 일부해소되고,
- 대행업체수를 2개 이상으로 하여야한다는 개정규정의 위법성 여부는 계속 쟁점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본 쟁점요인에 대하여 의회측 변호사(이상국)와 구청측 변호사(김구일)간에도 의견이 달라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박우신 위원, 손광일 위원, 천상옥 위원, 현수한 위원)

- 대행업체를 “2개 이상 업체로 하여야 한다”와 “2개 이상 업체로 할 수 있다” 시민국장의 의견은?
 - 대행구역을 “종로구 단일구역으로 한다”와 “분할 할 시” 의견은?
 - '94. 12. 21. 재의요구를 철회한 이유 및 철회에 대한 책임은?
 - 상위법제19조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법 위반 여부는?
 - 대행업체를 2개이상으로 하는 것은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코자 하는데?
- (답변자: 시민국장 김 현식)
-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요청함.
 - 구역을 분할 할 시 업자들이 처리가 편리한 빌딩 등에 치우쳐 고지대에 대한 수거를 기피할 것으로 판단됨.
 - 철회에 대한 책임을 짐.
 - 상위법에 위배됨.
 - 경쟁체제를 위하여 구청에서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

발의년월일 : 1995. 5. 11.

발 의 자 : 천상옥의원의4인

1. 주문

-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함.

2. 제안이유

- 집행부서인 구청에서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칙에 단서조항(안제10조제2항)을 둠.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

발의년월일 : 1995. 5. 11.

발 의 자 : 천상옥의원의4인

(찬성자 서명)

의안 번호	관련 359
----------	-----------

1. 제안이유

- 집행부서인 구청에서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칙에서 단서조항(안제10조제2항)을 둠.

2. 주요골자

- 부칙(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서울특별시종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
(안)

審 査 報 告 書

1995. 5. 1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5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1995년 4월 14일

다. 상정일자: 제4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1995. 5. 11):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시민국장 김 현식)

가. 제안이유

- '95. 1. 1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전면시행되고 있는 바, 이에 사용되는 관급 규격봉투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등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함으로써 본 제도의 조기착에 기여코자 함.

나. 주요골자

- 규격봉투를 일반규격봉투·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여 가정 및 사

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중 일반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은 특수 규격 봉투에 담도록 함.(안 제14조)

- 일반규격봉투의 용량을 30ℓ형을 추가하고 특수규격봉투의 용량은 50ℓ형으로 하며, 공공용 봉투의 용량도 다양화 함.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전문위원 장 소수)

- 종량제용 봉투와 관련된 민원을 수렴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 봉투규격 중 30ℓ와 특수규격봉투를 제작 보급함은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천상욱 위원, 박우신 위원, 정창희 위원)

- 규격봉투 판매실적은?
- 특수봉투 제작가격과 일반봉투 제작가격은?

(답변자:시민국장 김현식)

- '95. 3. 30일자 4억7천1백2십만원 임.
- 특수규격봉투 제작가격은 200원이고 일반 봉투 제작가격은 50원 임.

5. 討論 要旨(토론자:천상욱 위원)

-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

6. 審査結果:원안 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없음

8. 其他 必要한 事項:없음

○議長 李斗鶴 丁昌熙幹事!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議事日程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市 民行政委員會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異議가 없으면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日程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일반폐기물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일반폐기물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市 民行政委員會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의가 없으면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日程 제3항 '95년도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都建設委員會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회식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臨時會가 마지막인 것 같은 감이 듭니다. 임기 동안이라도 우리 다같이 구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일치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수고를 해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저의 말로 같음하고자 합니다.

以上으로 議事日程을 모두 마치고 제47회 鍾路區議會 臨時會 閉會를 선포합니다.

(10時15分 閉會)

○出席議員 14人

李斗鶴	芮相浩	李憲九
千相旭	玄壽漢	沈載得
李萬魯	丁昌熙	朴禹信
朴勸先	田永泰	金憲中
孫光一	金成贊	

이영호, 정현, 박영, 이영호, 정현